

4.1.16 시설물관리규정

제정 2000. 04. 21.

개정 2018. 07. 2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시설에 대한, 방호태세의 확립과 화재, 도난을 예방하고 학생교육과 지도에 위해로운 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의 모든 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편성)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방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.

1. 각 건물별, 실별, 관리책임자 편성
2.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반을 편성
3. 비상사태시 교직원 동원 계획 수립

제4조(주관부서) 본 대학의 시설물 관리 및 방호의 총괄 업무부서는 사무처가 주관한다.

제5조(난방) 본 대학의 난방장치 가동은 다음과 같다.

1. 기 간 : 11월 15일 ~ 익년 3월 31일
2. 가동시간 : 08:30 ~ 10:30 (08시 기준 8℃ 이하일 때 가동)
13:00 ~ 14:30 (12시 30분 기준 8℃ 이하일 때 가동)
18:00 ~ 20:30 (17시 30분 기준 10℃ 이하일 때 가동)
3. 가스난로 이외의 전열기구 사용금지

제6조(건물별, 실별 관리책임자) 각 건물별, 실별 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.

1. 각 건물별 관리책임자 : (정) 해당건물에 위치한 소속 부서의 장(선임학부(과)장)
(부) 해당건물에 위치한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자
2. 실별 관리책임자
 - 가. 일반행정사무실 : (정) 당해 행정부서의 장
(부) 행정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 <개정 2018.07.26.>
 - 나. 총학생회실 : (정) 학생복지처장
(부) 학생복지과장 <개정 2018.07.26.>
 - 다. 각부속기관 : (정) 부속기관의 장
(부) 부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<개정 2018.07.26.>
 - 라. 학회실 : (정) 당해 학부(과)장
(부) 해당학과 3학년 지도교수 <개정 2018.07.26.>
 - 마. 씨클룸 : (정) 학생복지처장
(부) 각 씨클 지도교수 <개정 2018.07.26.>

바. 교육과 관련 각종실습실 : (정) 해당 학부(과)장

(부) 지도교수 <개정 2018.07.26.>

사. 체육관 : (정) 핸드볼 감독

(부) 사용부서 해당 학부(과)장 <개정 2018.07.26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